

예 산 총 칙

2019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425,350,000 | 12,760,500 |
| 일반회계 | 378,378,504 | 11,351,355 |
| 특별회계 | 46,971,496 | 1,409,145 |
| 공기업특별회계 | 17,140,779 | 514,223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17,140,779 | 514,223 |
| 기타특별회계 | 29,830,717 | 894,922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| 12,100 | 363 |
| 의료보호특별회계 | 343,978 | 10,319 |
|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| 1,540,000 | 46,200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| 100,000 | 3,000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967,945 | 29,038 |
|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876,827 | 26,305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25,269,867 | 758,096 |
|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 | 720,000 | 21,600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[채무부담행위사업]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[명시이월사업조서] "해당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592,259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,800,000천원으로 한다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